

## 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』 특약(구 하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, 조항명 변경, 가입대상에 개인사업자 추가,  
수수료 면제종류에 타행 자동이체 추가, 조문 삭제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<b>『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』 특약(구 하나은행)</b></p> <p><b>제 1 조 약관의 적용</b>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 등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<u>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(구 하나은행)</u>』, 『<u>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</u>』을 적용합니다.</p> <p><b>제 2 조 가입대상</b>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<u>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.</u> ① ~ ⑦ (생략)</p> <p><b>제 3 조 ~ 제 5 조</b> (생략)</p> <p><b>제 6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</b> (생략) ① ~ ③ (생략) ④ <u>납부자자동이체</u>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⑤ (생략)</p> <p><b>제 7 조 기타</b> <u>위 제 6 조의 우대서비스의 내용 및 대상요건은 변경가능하며, 변경 시 변경사유,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. 단,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 21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려 드립니다.</u></p>	<p><b>『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』 특약</b></p> <p><b>제 1 조 적용범위</b>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 등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“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<u>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</u>』 및 『<u>예금거래 기본약관</u>』을 적용합니다.</p> <p><b>제 2 조 가입대상</b>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<u>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.</u> 1. ~ 7. (좌동)</p> <p><b>제 3 조 ~ 제 5 조</b> (좌동)</p> <p><b>제 6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</b> (좌동) 1. ~ 3. (좌동) 4. <u>납부자 자동이체(타행 자동이체 포함)</u>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5. (좌동)</p> <p><b>(삭제)</b></p>	<p>구행명 삭제</p> <p>조항명 변경</p> <p>구행명 삭제</p> <p>개인사업자 문구 추가</p> <p>타행 자동이 체 추가</p> <p>조문 삭제 (내용 중복)</p>